

2021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1월 20(목)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박수원, 신상진, 김태훈, 정재영, 김민수 (7명)

■ 불참의원 : 이건영, 이경훈, 박민태, 고민석 (4명)

4. 안 건

가. 보고 : 규정 제·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직제 규정 개정(안)	기획평가팀
2.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기획평가팀
3.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총무팀

나. 자문

1) 2021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학년도 본예산(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김진곤 의장이 외부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본 회의 참석이 늦어짐에 따라, 천성오 부의장이 참석의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시작하다.
- 천성오 부의장이 성원 확인 후(총원 11명 중 6명 참석) 개회를 선언하다.
- 회의를 자문건부터 시작하기로 하다.

【자문】

1) 2021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조정팀장이 2021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신상진 의원이 도서구입비 항목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조정팀 과장이 2021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기금인출을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금인출을 하지 않았기에 임의기금인출금 감소부분이 수입 항목이며, 도서구입비를 교비 및 일부 혁신사업비 예산으로 지출하였음을 설명하다.
- 신상진 의원이 조교 인건비 지출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다.
- 기획처장(참석자)이 행정조교 및 교육조교를 감축한 것이 아닌 동일하게 배정을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조교 운영이 축소되면서 지출이 감소한 것임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학생경비 감소 중 교내장학금 감소 내역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산조정팀 과장이 최종 결산 대비 내역임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2) 2022학년도 본예산(안)

- 예산조정팀장이 2022학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수입 증감내역 중 단기수강료 내역의 오류를 지적하고, 예산조정팀 과장이 수정, 보완하기로 하다.
- 천성오 의원이 수입 증감내역 중 국고보조금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SW 중심대학사업, 캠퍼스 사업 등 일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고, 예산조정팀장이 국고사업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수입을 편성했음을 설명하다.
- 김태훈 의원이 직원 명예퇴직 예산 반영에 대하여 문의하고, 예산조정팀장이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추후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천성오 의원이 인건비 예산이 작년대비 감소한 사유가 수입내역에서 각종 국고사업 미반영에 따른 지출요인의 감소 영향인지에 대하여 문의하고, 기획처장(참석자)이 해당 사유뿐 아니라, 2022학년도 본예산은 가급적 기금인출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수립을 하였고 추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할 때 기금인출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김태훈 의원이 학부 입학금에 대하여 문의하고, 기획처장(참석자)이 학부 입학금이 5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최초 입학금의 20%를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산입방식을 결정해야 함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입학금을 8학기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올리면 현재 재학생의 경우는 입학금을 중복 납입하게 되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1학년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올리면 1학년 등록금이 타 학년에 비해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조정을 적절히 해야함을 언급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며, 내년부터 최초 입학금의 20%를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적절히 조정하여 산입방식을 결정하도록 자문하다.

【보고 : 규정 제·개정(안)】

- 김진곤 의장이 도착함에 따라 의장의 회의를 진행하다.

1) 직제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제안부서)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고등교육 환경변화 및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
 - 효율적 업무 운영(불필요 보직 축소, 겸직 해제, 인력 재배치로 신규 채용 최소화)
- 주요 내용
 - 기획처 내부 조정 및 혁신사업단 이동
 - ⇒ 전략/기획 업무를 예산과 통합 관리 : 기획예산팀(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 ⇒ 대내외 평가/감사 업무 별도 분리 : 평가감사팀(대내·외 평가지표 관리 강화)
 - ⇒ 대학혁신사업단을 기획처 산하로 이동
 - 교육혁신원 내부 조정
 - ⇒ 운영팀을 "성과관리팀"으로 변경하여 총괄 운영 기능 부여
 - ⇒ 센터의 운영팀 삭제
 - 학생복지처 내부 조정 및 신설
 - ⇒ 학생복지처 명칭 변경 → 학생처
 - ⇒ 인재개발원 폐지
 - ⇒ 체육부의 체육지원팀으로의 변경
 - 중앙도서관 팀 통합
 - ⇒ 업무가 중첩된 팀들의 통합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성 향상 : 학술정보팀

▪ 김진곤 의장이 박수원 의원에게 (박수원 의원이 발송했던)이메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박수원 의원이 본교 규정이 가능하면 읽기 편하고 개정이 편하도록 전체 규정의 정리가 필요함을 건의하다.

▪ 김진곤 의장이 직제규정은 본교 조직의 근간이며 직제규정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다른 규정들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음을 언급하며, 박수원 의원의 의견 또한 타당한 의견이므로 장기 사업으로 향후 체계성 있는 규정의 정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다.

- 김태훈 의원이 각종 대학평가를 고려하여 인권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기획처장이 인권센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며 현재 학생처와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다.

- 김민수 의원이 전체 규정 정리의 부분은 법률가 또는 외부 전문가 기관 등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음을 제안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제안부서)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 기획처 내부 조정 및 혁신사업단 이동에 따른 사무분장 개정

- ⇒ 기획예산팀 및 평가감사팀 사무분장 조정 및 신설

- ⇒ 대학혁신사업단을 기획처로 이동에 따른 사무분장 이동

- 학생복지처 및 체육부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 중앙도서관 팀 통합에 따른 부속기관 사무분장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직제규정 제14조의 2(기획처의 조직) ③항에는 기획처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에는 청탁방지담당관 업무가 평가감사팀 업무로 분장되어 있음을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본교 청탁방지담당관은 기획처장이며, 청탁방지 관련 업무를 평가감사팀에 분장함을 설명하며,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제5조(평가감사팀) 12호를 '청탁방지 관련 업무'로 수정하기로 하고, 모든 의원이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이 본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이 누구인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가 필요함을 언급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으로 가결하다.**

3)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 총무팀장(제안부서)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정 사유

- 차단기가 설치된 대학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가 아님

- 교육부에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권고

-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칙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및 조치 등
- 총무팀장이 본교에 별도의 안전팀(가칭)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3개 부서에서 공동 관리 예정임을 설명하다.
 - 총무팀: 주관부서, 규정 제정 및 관리
 - 시설관재팀: 전용 거치구역 설정, 충전 시설 등 시설 관리
 - 학생복지팀: 안전운전 확산, 지도 단속, 의무 교육 실시 관리
- 김진곤 의장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난 후 개인형 이동장치가 상당의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본 규정 제정에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 주기를 언급하다.
- 박수원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정의와 본 규정 제정(안)과의 정의가 다를 것을 지적하다.
 - 제정(안)의 정의로 보면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임대형(이용권 구매) 이동장치 등이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9조2.에 따른다"로 정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박수원 의원이 본교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주차구역을 만들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진입을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만약 학생이 불허된 구역까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당사자에게 묻게 하는 방침을 제안하고, 김민수 의원도 박수원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 총무팀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다.
 - 김민수 의원이 교내 안 차도와 인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상황에서 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함을 언급하다.
 - 김진곤 의장이 본교 교내 안에 진입로 및 주차구역을 만들고, 주차구역까지만 진입 및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규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 기획처장(참석자)이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내용을 활용해서 진입 가능 및 불가능한 구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다.
 - 박수원 의원 및 김민수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허용에 대한 본교의 방침을 우선 정하고, 그 방침을 토대로 규정을 제정하여 재상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김민수 의원이 제2조(적용범위)를 "이 규정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로와 주차구역까지 적용한다."등의 문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총무팀장이 제2조(적용범위) 및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의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하고, 박수원 의원은 전체 규정의 문맥상 옳지 않다고 답변하다.
 - 천성오 의원이 만약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로 및 주차구역을 만들고 주차구역까지만 진입 및 주차를 허용한 상황에서 학생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이 모든 귀책사유를 당사자에게 묻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원칙적인 부분(학교 방침)부터 결정한 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을 제안

하다.

- 김진곤 의장이 해당 규정을 언제까지 제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총무팀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 후 보고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임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이 본 규정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내에 진입 가능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취지는 이해하나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허용에 대한 본교의 방침(원칙)을 우선 정하고 수정 보완 후 차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 총무팀장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다.

-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허용에 대한 본교의 방침(원칙) 수립
(학생과의 협의 필요성 여부 포함)

- 규정 수정 보완 후 차후 재상정

- 만약, 학생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세부적인 조항 수정 후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부분에서 별도로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허용 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정

- 기타 의견

- (김민수 의원) 제1조(목적) 광운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 (박수원 의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부터 전체 구성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로 시작하는 문구를 제안함.

- (박수원 의원) 제21조(안전사고의 조사) 별첨으로 공통된 현장조사서 양식을 만들어야 관리가 편할 것으로 생각됨.

- (김진곤 의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교내 구성원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관계 부처로서 학생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본 규정 제정 시 학생들의 동의를 사전적으로 필수적인 사안은 아님.

의결내용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허용에 대한 학교의 방침(원칙)을 우선 정하여 수정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하며 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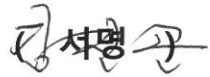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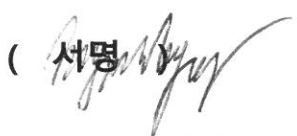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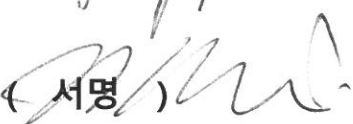
6. 폐회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불 입 : 회의자료 1부. 끝.

2022년 1월 20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부 의 장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이 건 영	(서명)
평 의 원	박 수 원	(서명) 
평 의 원	이 경 훈	(서명)
평 의 원	신 상 진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서명) 
평 의 원	박 민 태	(서명)
평 의 원	정 재 영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